

# 전기사업법(안전관리분야) 유권해석 사례

문의 | 민원봉사실 02-2182-0741~3

## 01

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근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지



-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·제2항·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“상시근무”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, 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”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업무를 말합니다.
-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등은 소유자와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 근무시간 이외라 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, 근무시간 외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순회점검 및 확인, 비상연락체계 유지,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직무이며 상시 근무에 관한 법의 취지일 것입니다.
- 안전관리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,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.
- 또한,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였는 바,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,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4. 09)

## 02

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반건물의 관리소장직을 겸직할 수 있는 지

? !

-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소속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별표13에 의하여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합하여 60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.
-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또한 별표13에서 안전관리자의 대행범위를 가중치로 제한한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개월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정한 입법취지로 볼 때, 전기안전관리자는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3. 11. 03)

## 03

공동주택을 한개의 단지로 사업승인을 받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한 단지내에 전기설비가 3개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,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선임이 가능한지

- A(1,250kW), B(1,080kW), C(1,075kW)

? !

- 동일구내(담, 울타리 등으로 구획)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기설비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비록 한단지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분된 공동주택으로서 독립된 수전설비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5. 06)